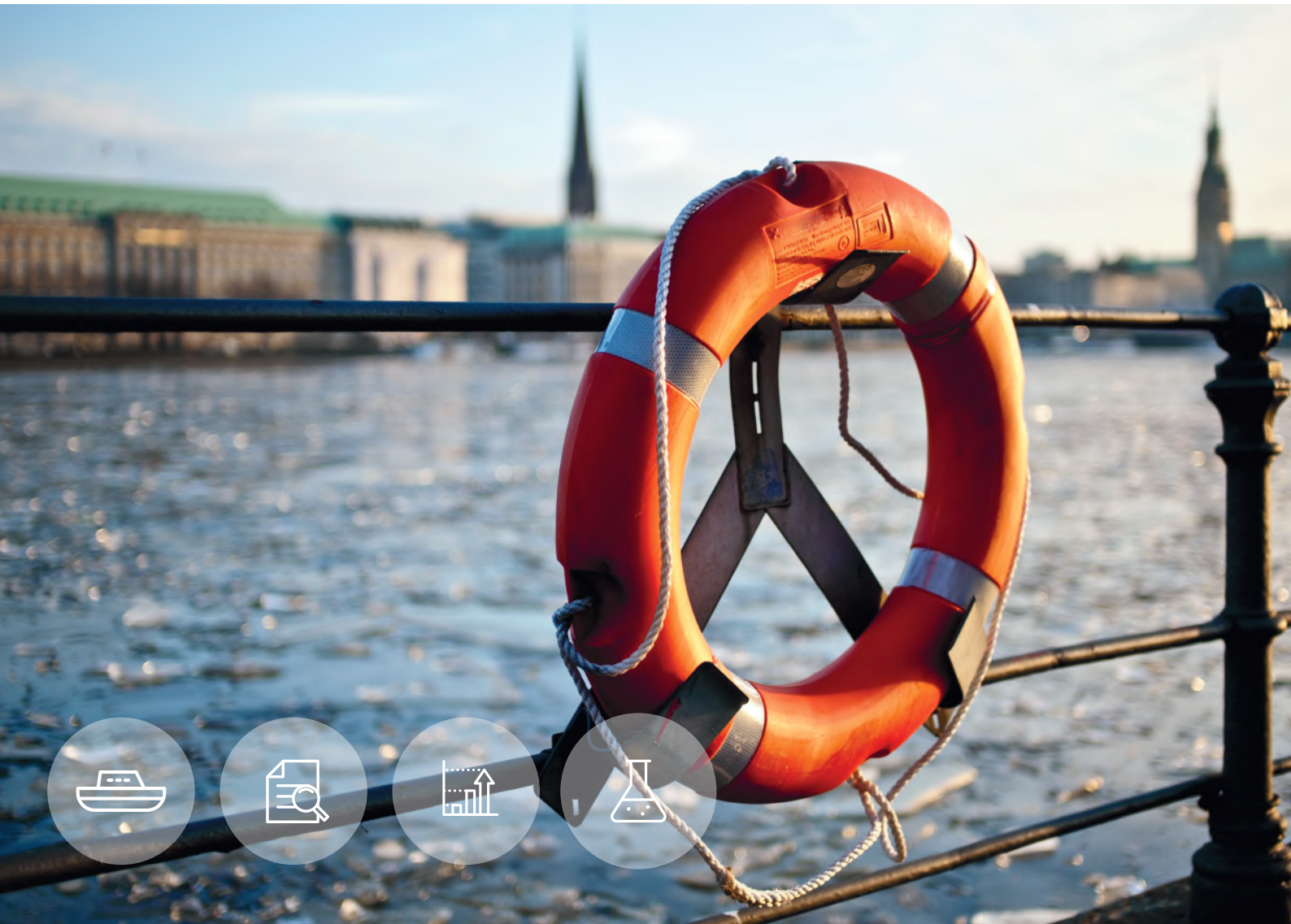


# FORMAL APPROVAL TESTING

## 해수상용품 형식승인시험 안내



*"Committed To Quality"*

**fi*i*** FITI 시험연구원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 About FITI

(재)FITI시험연구원은 1986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용 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구명뗏목 외 45개 품목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최초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 1974)'에 규정된 FTP Code Part 7(커튼류), Part 8(가구류), Part 9(침구류)의 화재성능평가시험기관으로 IMO(국제해사기구)에 등재되어, 해수상용품 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험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14년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어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착용성-항상형 구명조끼에 대한 형식승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레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식승인 시험개요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어선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어선용품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 형식승인시험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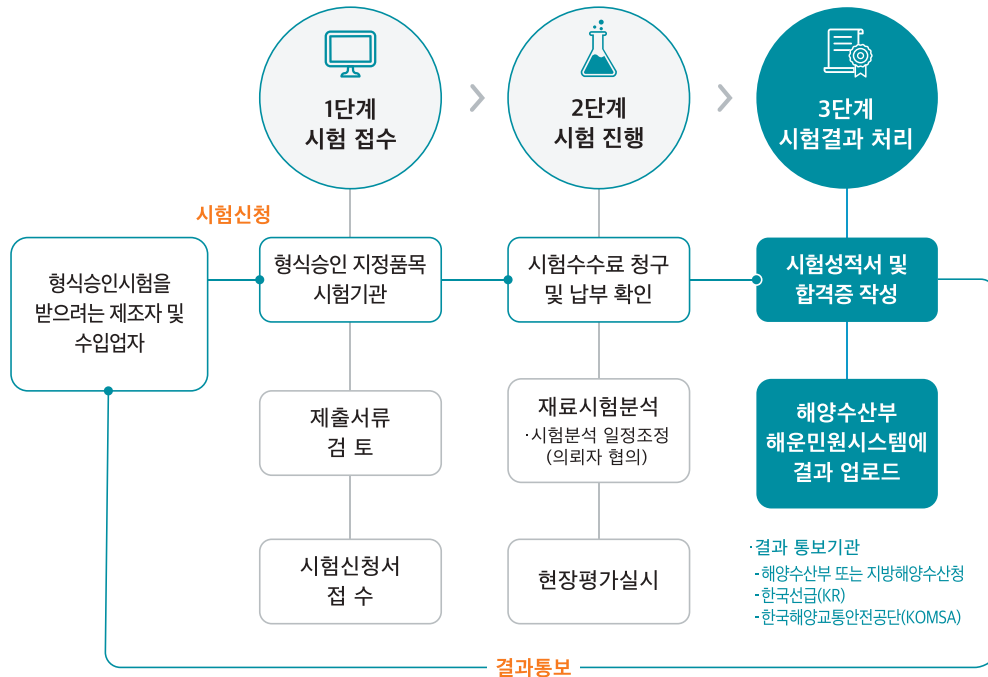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 지정시험기관

관련법령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시험품목 : 구명조끼(팽창식,고체식,복합식), 작업용구명, 구명부환, 소화호스, 보온구, 역반사재, 커튼류, 가구류, 침구류, 팽창식 구명뗏목 등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관련법령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시험품목 : 구명조끼(팽창식,고체식,복합식-착용성 항상형), 어선용 구명의, 한국형 구명뗏목

## 형식승인 시험 절차



## 형식승인 시험 접수 시 유의사항

- 시험 품목 별 수수료 및 시험 소요일수 상이
- 접수 전 담당자와 상담 후 시험 접수 진행 필수
- 구명조끼 수중성능평가(현장평가)의 경우, 시험 수수료 외 피시험자 일반 별도 청구

## 형식승인 제도 관련 후속일정

-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
  - 선박안전법 제18조 6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증서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형식승인 검정기준**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검정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의 경우 한국선급(KR)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문의 필요
  - 검정 항목 중 검정 장소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
  - 형식승인 받은 날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은 해당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 생략 가능, 이후 매 1년마다 검정 필수





www.fiti.re.kr

---

- 시험 문의처

산업본부 부품소재사업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T. 043-711-8828, 043-715-7917  
F. 043-711-8806

---

- 형식승인 관련 지원 안내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98  
T. 053-551-2150  
F. 053-551-2148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14  
T. 051-463-5462  
F. 051-462-8803